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○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 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정원의 총수 : 2,468명 ⇒ 2,472명 (4명 증원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12명 ⇒ 1,416명 (4명 증원)
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960명 (변동없음)
- 교육공무원의 정원 : 44명 (변동없음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2명 (변동없음)

□ 의안전문 : 별 첨

□ 신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
□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"2,468명"을 "2,472명"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"1,412명"을 "1,416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,468명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 (정원의 총수) ····· ····· 2,472명 ····· ·····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412명	1. ····· : 1,416명
2 ~ 4. (생 략)	2 ~ 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○ 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-⑤ (생 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○ 제21조 (정원의 규정)

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-④ (생 략)